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83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문대림・박수현・윤준병

박용갑 · 김문수 · 이병진

정일영 • 문금주 • 서삼석

임오경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 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과정 외에 이를 평가하여 지정취소를 하거나 재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으며 업종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됨.

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 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공모의 방법을 통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 나.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 다. 도매시장법인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 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자 권 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3 조제8항 신설).
- 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 바.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 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일정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지정하되"를 "공모의 방식을 통하여 지정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중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를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재지정 및 지정조건 등에"로 한다.

-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6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 및 농수

산물의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매매방법)"을 "(매매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별 채용규모,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 ·제2호·제4호 및 제5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 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 3. 수산부류: 거래금액 1천분의 60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 및 해체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제82조제3항 중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를 "취소하여야 하며"로, "취 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2회 받은 경우

제86조제2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재지정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 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 ------ 광모의 방식을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 통하여 지정하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 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 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6항에 <신 설>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 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

<신 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매매방법) (생략)

<신 설>

법인을 재지정 하려는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 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 및 농수산물의 생산자 권 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⑨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의 지 정절차, 재지정 및 지정조건 등

제32조(매매방법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별 채용규 모,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전담인 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 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다.

<신 설>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 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 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
 의 20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
 의 70(서울특별시 소재 중앙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 3. 수산부류: 거래금액 1천분의 60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장수할 수 있는 도살 및 해체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당하는 경우에는-----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 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 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신<u>설></u>

<신 설>

④ ~ ⑦ (생 략)

-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 의 70
-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 천분의 50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취소하여야 -----취소하여야 한

다.

-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2회 받은 경우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6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략)
- 2. <u>제23조제1항에</u> 따른 <u>지정을</u>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 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 8. (생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u>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u>
<u>지정 또는 재지정을</u>
3. ~ 8. (현행과 같음)